

2014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신규 155억원(지정공모과제 70억원, 자유응모과제 85억원)
 - * 지정공모, 자유응모 예산은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가능
 - ** 13년도 동 사업 경쟁률은 14 : 1

2.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모바일 기술 분야(지정공모)

공모방식	지원내용	예산
지정공모 (제품서비스)	모바일 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신제품 개발 (예 : 신용카드 결제단말 동글, 전자 도어록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연동 제품)	70억원
자유응모 (제품서비스)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신기술 및 플랫폼 개발 (예 : 태양광발전설비 운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RFID기술을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관광특화 네비게이션)	85억원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예 :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체험형 숙박 서비스, 운송구간별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 방안)	

- ※ 지정공모 과제의 개발내용(RFP)은 www.smtech.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정공모 과제로 신청 불가
- ※ 지정공모 과제의 개발내용(RFP)에 해당할 경우 자유응모 방식으로 신청 불가
- ※ 분야별 예산은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가능

3.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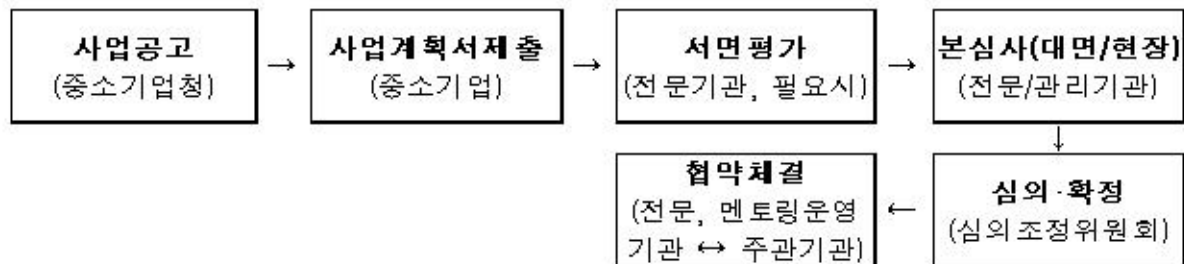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사업 추진절차

- 자유응모 과제



- 지정공모 과제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멘토링 운영기관> (사)한국앱전문가협회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 기술개발내용에 유희, 함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예비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 신청기업현황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관리기관)
- (본심사_대면평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경영현황표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 검토(전문기관)
 - * 모바일 기술분야 지정공모 과제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접수
- (본심사_현장평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지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접수마감일은 사업계획서 접수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제안서 접수단계에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임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6. 신청기간 및 방법

- * 자유응모과제는 제안서 신청후(제안서 신청 기간 : 4.9(수)~5.9(금)) 제안서가 통과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별도 통보예정)
- * 지정공모 과제는 제안서 신청단계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음(지정공모 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4.9(수)~5.9(금))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만 가능

□ 제안서 신청

- 대상 : 자유응모 과제
- 제안서 신청기간 : 4월 9일(수)~5월 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서비스P&D 예비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안서와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기술혁신개발사업의 4월 폴더 클릭)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및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제안서는 3장 이내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 사업계획서 신청

- 대상 : 지정공모 과제, 자유응모 과제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과제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지정공모 과제 : 4.9(수) ~ 5.9(금)
 - 자유응모 과제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과제 : 예비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6월초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 관리 → 과제신청 → 일반과제신청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기술혁신개발사업의 4월 폴더 클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		
	Part II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해 당 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지정공모과제는 '14.7.1일로, 자유공모과제는 '14.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예비심사, 과제기획, 본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예비심사(5월)

-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독창성 등을 검토·심사

- | |
|---|
| ① 사전 적합성 검토(전문기관)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
| ② 예비심사(관리기관) : 사업목적과 부합성 검토 및 세부 과제별 적절성 평가 |
| - 제품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기술융합성·지원필요성 등 |
| - 지식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적용가능성·지원필요성 등 |

-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 관리기관은 예비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15일 부여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허함

□ 본심사 (6~7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구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현장평가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관리기관 소속직원 동행 가능)의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중소기업여부, 기술개발 실적·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 (7~8월)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및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가점 - 감점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실시, 협약서류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8.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 접수마감일은 사업계획서 접수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제안서 접수단계에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임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분야, 기술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서비스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전일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안서 접수단계에서는 탈락사유로 처리하지 않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안서 제출시에는 탈락사유로 처리하지 않음
- *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㉔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안서 제출시에는 탈락사유로 처리하지 않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10. 기타 공지사항

① 1개 중소기업은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 자유응모(제품서비스분야), 자유응모(지식서비스분야), 지정공모 중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유응모중 제품서비스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는 과제의 성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분야조정이 가능함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온라인 과제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3>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멘토링 운영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함

☞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운영 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보증,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지도를 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2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 소요 비용 : 주관기관은 과제당 1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 비용은 사업비에서 자동으로 멘토링 운영기관에 지급될 예정

☞ 주관기관에서 신청한 멘토링 분야는 과제의 성격과 멘토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1.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멘토링 운영기관	(사)한국엠전문가협회	멘토링 프로그램	02-853-5559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감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 ~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 ~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붙임 1]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유형 예시

[붙임 2]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붙임 3] 연도별“저변확대”및“선택집중”사업 현황

[붙임 1]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유형 예시

□ 지원유형별 예시

- * 제안서·사업계획서의 개발내용이 기술개발이 주(主)가 되는 경우 제품서비스로, 서비스개발이 주(主)가 되는 경우 지식서비스로 신청

세부분야	내용	예시
제품서비스 (유형)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신기술 개발	태양광발전설비 운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음원사이트 연동을 통해 신규 음원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기기 개발
		RFID 기술을 활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 개발
		동작센서를 이용한 무인 숙박 시스템
		블로그 연동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관광특화 네비게이션 개발
		SNS를 활용한 앱 기반 광고 프로그램 개발
		스크린골프의 센서기술 개선을 통한 스크린야구(축구) 시스템 개발
지식서비스 (무형)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호텔 등의 초과예약 적정 수량 모델링
		객실요금 최적화를 위한 분석
		운송구간별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 방안 연구개발
		병원 예약 고객의 이탈원인 분석과 이탈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발
		테마파크 장기 이용고객에 대한 최적 가격과 서비스 연구

□ 제품서비스 지식서비스 분야별 개발내용 예시

대분류	중분류	설명	
제품서비스	시장경쟁력 창출	유통	제품 마케팅 및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유통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기술
		정보	글로벌 시장 및 경쟁현황,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전달·관리·통합 기술
	제품 개발	성능개선	기존 제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능개선 관련 기술
		신뢰성	개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신뢰성 확보 기술
		인증	국내외 수요기업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안정적 사업화 달성을 위한 인증 관련 기술
		설계	기존의 축적된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창의적 설계기술 및 공용활용 설계 기술
	기반기술 혁신	공정	불량률 감소, 생산효율 향상, 원가절감 등 제품의 공정 프로세스 상 다양한 효율성 향상 촉진을 위한 기술
		생산기반	기존 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기반 기술
지식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전달체계	신시장 창출, 타깃 시장 설정, 기업 비즈니스 리모델링 및 시장진입 전략 구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달체계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신규 아이템 발굴, 시장 및 기술 관련 빅데이터 분석제공, 기술-제품-시장 연결 미래예측 등 중소기업의 기업다각화 및 제 2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모델 개발	

[붙임 2]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보증, 투자, 기술,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지도를 말함

□ 멘토(자문)링 프로그램 지원 내용

멘토링분야	주요내용	특징
기술컨설팅 및 기술평가보증	·기업역량에 맞는 맞춤형 기술컨설팅과 시장컨설팅을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역량분석 ·기술컨설팅 및 시장컨설팅 ·기술금융지원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IR	·미래재무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 ·사업계획서 및 투자유치실무 코칭 ·IR지원 및 투자유치 세부협상 자문	·민간투자기관과 전문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사업화전략 등 분석 ·멘토링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해외사업 타당성분석 및 파일럿테스트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방안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전략 수립 ·비용구조 및 수익모델 파악	·현지 기업가, 공공기관, 거점 무역관들을 연계하여 사업모델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파일럿테스트 실시
모바일기반 서비스기술 및 사업화 멘토링	·SW특화 모바일서비스기획·개발 멘토링(모바일앱 및 디바이스 탑재 SW) ·개발된 제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Biz모델진단) 및 마케팅전략 수립	·상용화 목적의 우수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품 판매채널 및 마케팅 연계지원
특허전략 또는 디자인 컨설팅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 R&D기획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지원 ·UI/UX 디자인연구 기반의 서비스표준설계, 서비스·브랜드디자인 멘토링	·가치지향적 특허권 확보, 관심국가에 대한 특허관련 분쟁지원 및 예방 ·R&D효율화, 사업화기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 신규아이템 발굴, 사업융합 촉진 ·디자인 기반의 서비스 설계, BI개발을 통한 브랜드네임/로고/심볼 제작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과제 수행기간 이내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상기 멘토링 분야중 1, 2 순위를 선택하고 멘토링 운영기관은 과제의 성격과 멘토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멘토링 분야 지정

□ 멘토링 비용 : 기업당 10백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 멘토링 업무절차



[붙임 3]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p>생산 환경 혁신 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p>
2010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p>
2011	<p>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학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학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2012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p>

	<p>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 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 걸음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트)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2013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p>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